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부 차관 밑에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군인권개선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일부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1명(고위공무원 1명)은 증원하고, 인력 1명(4급 1명)은 기존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며, 군용비행장 군 소음 보상 관련담당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군 질병관리 담당 인력 2명(4·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국방부의 정원 1명(전문경력관 1명)을 행정·기술직군으로 전환하고, 1959년 이전 퇴직군인 급여 지급을 위하여 국방부에 두는 한시정원 2명(5급 1명, 7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6월 30일에서 2025년 6월 30일로 3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호, 2022. 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방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병영문화혁신팀을 폐지하되, 양성평등 업무와 성폭력예방·대응 업무를 분리하면서 신설되는 군인권개선추진단장 보좌를 위해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양성평등정책팀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하고, 국방부가 운영하는 개방형직위를 일부 변경하며, 인사복지실 하부조직의 일부 분장 사무를 조정하고, 책임운영기관인 국방홍보원의 정원 1명(관리운영직군 9급 1명)을 전문경력관 1명(나군 1명)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2. 0. ~ 2.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법무담당관·규제개혁법제담당관 및 인권담당관 각 1명을 두되, 법무담당관은 영관급장교로, 규제개혁법제담당관 및 인권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를 “법무담당관 및 규제개혁법제담당관 각 1명을 두되, 법무담당관은 영관급장교로, 규제개혁법제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로 한다.

제5조제4항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12. 국방 송무정책 수립 및 소송업무 총괄·조정

13. 소송 배상금 지급과 관련한 업무

제10조제5항 중 “제13조제3항제26호부터 제29호까지, 제29호의2 및 제30호부터 제33호까지의”를 “제13조제3항제26호부터 제33호까지의”로 한다.

제10조제6항 중 “인사기획관리과·인력정책과·병영정책과·인적자원개발과·군종정책과·군무원정책과·병영문화혁신팀·동원기획과·자원동원과·예비전력과·복지정책과·국방일자리정책과·보건정책과·군인연금과·군인재해보상과 및 양성평등정책과를 두되, 인사기획관리

과장·병영정책과장·군종정책과장·예비전력과장 및 복지정책과장은 영관급장교로, 인력정책과장·인적자원개발과장·군무원정책과장·동원기획과장·자원동원과장·국방일자리정책과장·보건정책과장·군인연금과장·군인재해보상과장 및 양성평등정책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병영문화혁신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를 “인사기획관리과·인력정책과·병영정책과·인적자원개발과·군종정책과·군무원정책과·동원기획과·자원동원과·예비전력과·복지정책과·국방일자리정책과·보건정책과·군인연금과 및 군인재해보상과를 두되, 인사기획관리과장·병영정책과장·군종정책과장·예비전력과장 및 복지정책과장은 영관급장교로, 인력정책과장·인적자원개발과장·군무원정책과장·동원기획과장·자원동원과장·국방일자리정책과장·보건정책과장·군인연금과장 및 군인재해보상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로 한다.

제10조 중 제13항 및 제2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14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6항 제5호를 삭제한다.

3의2. 예비군지휘관 및 예비군관리 군무원의 인사정책 수립 및 관리
제18조제1항 중 “정보화기획관·법무관리관·감사관 및 국방전산정보원장을 말하고, 정보화기획관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를 “군인

권개선추진단장·법무관리관·감사관 및 국방전산정보원장을 말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양성평등정책과장”을 “성폭력예방대응담당
관”으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군인권개선추진단장) ①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은 고위공무원
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
으로 한다.

② 군인권개선추진단장 밑에 군인권총괄담당관·성폭력예방대응담당
관·병영문화혁신담당관 및 양성평등정책팀장 각 1명을 두되, 군인권
총괄담당관·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병영문화혁신담당관은 부이사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양성평등정책팀장은 서기관·기술서
기관·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보건사무
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
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군인권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을 보
좌한다.

1. 군내 인권정책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군내 인권실태 점검 및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구제
3. 군내 인권 관련 법령·제도에 관한 사항
4. 군내 인권 관련 국제협약에의 가입 및 국내시행에 관한 사항
5. 인권상담 및 인권지킴이 운영 관리

6. 군 인권교육에 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7. 군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관리 및 과정에 대한 분석·평가
 8.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및 인권침해사건 조사 등 업무 협조
 9. 장병인권 관련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지원
 10. 주요 군 과거사 관련 업무
 11. 기타 장병인권 업무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등
- ④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인권개선추진단장
을 보좌한다.

1. 국방 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 정책의 수립·점검
2.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령의 관리 및 제도개선
3.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4.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체계 운영 총괄 및 개선
5. 국방분야 성희롱·성폭력 사건 DB구축 및 분석
6. 군내 성희롱·성폭력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7.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 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및 홍보 시행
8.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를 위한 대·내외 협력체계 구축

⑤ 병영문화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을
보좌한다.

1. 병영문화 발전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및 조정
2. 병영문화 발전을 위한 제도 연구
3. 병영문화 개선에 대한 추진과제 발굴 및 진행상태 확인

4. 병영문화 개선에 관한 관련 기관 협의
5. 군인복무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업무
6. 군기장 확립 및 군기(軍紀) 사고예방에 관한 업무
7.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8. 국방부조사본부 업무(군기 사고예방에 관한 업무로 한정한다)의 지도·감독

⑥ 양성평등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을 보좌한다.

1. 국방 분야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계획의 수립·조정
2. 국방 분야 성 주류화(性 主流化) 제도 운영 및 성차별적 정책 모니터링·개선
3. 국방 분야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점검에 관한 사항
4. 성인지·양성평등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5. 양성평등정책 및 성인지 교육 관련 대·내외 협의에 관한 사항
6. 외국의 여군 관련 정책 분석 및 교류 업무

⑦ 군인권개선추진단장 밑에 두는 공무원의 한시정원은 별표 6과 같다.

제21조제1항 중 “2022년 6월 30일”을 “2025년 6월 30일”로 한다.

별표 1 중 총계 “677”을 “679”로 하고, 일반직 계 “669”를 “671”로 하며, 행정주사·사서주사·공업주사·임업주사·보건주사·환경주사·항공주사·시설주사·방재안전주사·전산주사·방호주사·방송통신주사 또

는 기록연구사 “162”를 “164”로, 행정주사보·사서주사보·공업주사보·임업주사보·보건주사보·환경주사보·항공주사보·시설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전산주사보·방호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64”를 “65”로 하고, “전문경력관 나군(보안관리담당) 1”을 삭제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678”을 “680”로 하고, 일반직 계 “670”을 “672”로 하며, 행정주사·사서주사·공업주사·임업주사·보건주사·환경주사·항공주사·시설주사·방재안전주사·전산주사·방호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162”를 “164”로, 행정주사보·사서주사보·공업주사보·임업주사보·보건주사보·환경주사보·항공주사보·시설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전산주사보·방호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64”를 “65”로 하고, “전문경력관 나군(보안관리담당) 1”을 삭제한다.

별표 3 중 3급 또는 4급 이하 “121”을 “120”으로 하고, 전문경력관 “38”을 “39”로 한다.

별표 6 중 “제19조제9항 및 제20조제6항 관련”을 “제19조제9항, 제20조제6항 및 제20조의2제7항 관련”으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군인권개선추진단(준속기한: 2025년 2월 28일)

총계	2
일반직 계	2
고위공무원단	1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별표 7 1)의 존속기한 중 “2022년 6월 30일”을 “2025년 6월 30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형 직위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에 따라 정보화기획관의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용 당시 정하여진 임용기간 중 남은 기간까지 계약직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3조(군인권개선추진단장의 존속기한 만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29조의 2에 따른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의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다음 날에 군인권개선추진단장 밑에 두는 공무원의 한시정원 중 1명(4급 1명)은 별표 1 및 별표 1의2에 따른 국방부의 공무원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으로 본다.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양성평등정책팀은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양성평등정책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이 분장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법무관리관) ① (생략)	제5조(법무관리관) ① (현행과 같음)
② 법무관리관 밑에 <u>법무담당관·규제개혁법제담당관·인권담당관</u> 각 1명을 두되, 법무담당관은 <u>영관급장교로</u> , <u>규제개혁법제담당관</u> 및 <u>인권담당관</u> 은 <u>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u> 으로 보한다.	② ----- <u>법무담당관 및 규제개혁법제담당관</u> 각 1명을 두되, <u>법무담당관</u> 은 <u>영관급장교로</u> , <u>규제개혁법제담당관</u> 은 <u>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u>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u>규제개혁법제담당관</u> 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u>법무관리관</u> 을 보좌한다.	④ ----- -----.
1. ~ 11. (생략)	1. ~ 11. (현행과 같음)
<신설>	12. <u>국방 송무정책 수립 및 소송업무 총괄·조정</u>
<신설>	13. <u>소송 배상금 지급과 관련한 업무</u>
제10조(인사복지실) ① ~ ④ (생략)	제10조(인사복지실)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u>보건복지관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3항제26호부터 제29호까지, 제29호의 2 및 제30호부터 제33호까지의</u>	⑤ ----- ----- <u>제13조제3항제26호부터 제33호까지의</u> -----.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인사복지실장 밑에 <u>인사기획관리과</u>·<u>인력정책과</u>·<u>병영정책과</u>·<u>인적자원개발과</u>·<u>군종정책과</u>·<u>군무원정책과</u>·<u>병영문화혁신팀</u>·<u>동원기획과</u>·<u>자원동원과</u>·<u>예비전력과</u>·<u>복지정책과</u>·<u>국방일자리정책과</u>·<u>보건정책과</u>·<u>군인연금과</u>·<u>군인재해보상과</u> 및 <u>양성평등정책과</u>를 두되, <u>인사기획관리과장</u>·<u>병영정책과장</u>·<u>군종정책과장</u>·<u>예비전력과장</u> 및 <u>복지정책과장</u>은 영관급장교로, <u>인력정책과장</u>·<u>인적자원개발과장</u>·<u>군무원정책과장</u>·<u>동원기획과장</u>·<u>자원동원과장</u>·<u>국방일자리정책과장</u>·<u>보건정책과장</u>·<u>군인연금과장</u>·<u>군인재해보상과장</u> 및 <u>양성평등정책과장</u>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⑥ ----- 인사기획관리과·인력정책과·병영정책과·인적자원개발과·군종정책과·군무원정책과·동원기획과·자원동원과·예비전력과·복지정책과·국방일자리정책과·보건정책과·군인연금과 및 군인재해보상과를 두되, 인사기획관리과장·병영정책과장·군종정책과장·예비전력과장 및 복지정책과장은 영관급장교로, 인력정책과장·인적자원개발과장·군무원정책과장·동원기획과장·자원동원과장·국방일자리정책과장·보건정책과장·군인연금과장 및 군인재해보상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	⑦ ~ ⑫ (생략) ⑬ 병영문화혁신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⑭ 동원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⑮ (생략) ⑯ 예비전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예비군지휘관 및 예비군관리 군무원의 인사정책 수립 및 관리 ⑰ ~ ㉑ (생략) ㉒ 양성평등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8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란 정보화기획관·법무관리관·감사관 및 국방전산정보원장을 말하고, 정보화기획관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⑦ ~ ⑫ (현행과 같음) <삭제> ⑭ -----. 3의2. 예비군지휘관 및 예비군 관리 군무원의 인사정책 수립 및 관리 ⑮ (현행과 같음) ⑯ -----. <삭제> ⑰ ~ ㉑ (현행과 같음) <삭제> 제18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 ----- 군인권 개선추진단장·법무관리관·감 사관 및 국방전산정보원장을 말 한다. ② -----
---	--	--	--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규제개혁법제담당관, 국방일자리정책과장, 양성평등정책과장, 국방홍보원 국방일보부장 및 국방홍보원 방송뉴미디어부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 성폭력예방대응
담당관, -----

-----.

제20조의2.(군인권개선추진단장)

①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은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군인권개선추진단장 밑에 군인권총괄담당관·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병영문화혁신담당관 및 양성평등정책팀장 각 1명을 두되, 군인권총괄담당관·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병영문화혁신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양성평등정책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다.

③ 군인권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을 보좌한다.

1. 군내 인권정책에 대한 종합 계획 수립 및 시행
2. 군내 인권실태 점검 및 인권 침해 사건의 조사·구제
3. 군내 인권 관련 법령·제도에 관한 사항
4. 군내 인권 관련 국제협약에의 가입 및 국내시행에 관한 사항
5. 인권상담 및 인권지킴이 운영 관리
6. 군 인권교육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7. 군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관리 및 과정에 대한 분석·평가
8.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및 인권침해사건 조사 등 업무 협조
9. 장병인권 관련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지원
10. 주요 군 과거사 관련 업무

<신 설>	11. 기타 장병인권 업무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등
<신 설>	④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을 보좌한다.
<신 설>	1. 국방 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 정책의 수립·점검
<신 설>	2.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령의 관리 및 제도 개선
<신 설>	3.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신 설>	4.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체계 운영 총괄 및 개선
<신 설>	5. 국방분야 성희롱·성폭력 사건 DB구축 및 분석
<신 설>	6. 군내 성희롱·성폭력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신 설>	7.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 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및 홍보 시행
<신 설>	8.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를 위한 대·내외 협력체계 구축
<신 설>	⑤ 병영문화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을 보좌한다.

<신 설>	1. 병영문화 발전을 위한 종합 대책 수립 및 조정
<신 설>	2. 병영문화 발전을 위한 제도 연구
<신 설>	3. 병영문화 개선에 대한 추진 과제 발굴 및 진행상태 확인
<신 설>	4. 병영문화 개선에 관한 관련 기관 협의
<신 설>	5. 군인복무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업무
<신 설>	6. 군기강 확립 및 군기(軍紀) 사고예방에 관한 업무
<신 설>	7.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신 설>	8. 국방부조사본부 업무(군기 사고예방에 관한 업무로 한정한다)의 지도·감독
<신 설>	⑥ 양성평등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을 보좌한다.
<신 설>	1. 국방 분야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계획의 수립·조정
<신 설>	2. 국방 분야 성 주류화(性 主流化) 제도 운영 및 성차별적 정책 모니터링·개선
<신 설>	3. 국방 분야 양성평등 문화 확

행정주사보·사서주사보· 공업주사보·임업주사보 ·보건주사보·환경주사 보·항공주사보·시설주 사보·방재안전주사보· 전산주사보·방호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u>64</u>	<u>65</u>	+1
·	·	·	
·	·	·	
<u>전문경력관 나군(보안관리 담당)</u>	<u>1</u>	<u><삭 제></u>	-1
·	·	·	
·	·	·	

[별표 1의2]

국방부 공무원(군인제외) 정원표(제16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678</u>	<u>680</u>	+2
·	·	·	
·	·	·	
일반직 계	<u>670</u>	<u>672</u>	+2
·	·	·	
·	·	·	
행정주사·사서주사·공업 주사·임업주사·보건주 사·환경주사·항공주사 ·시설주사·방재안전주 사·전산주사·방호주사 ·방송통신주사 또는 기 록연구사	<u>162</u>	<u>164</u>	+2
행정주사보·사서주사보· 공업주사보·임업주사보 ·보건주사보·환경주사 보·항공주사보·시설주 사보·방재안전주사보· 전산주사보·방호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u>64</u>	<u>65</u>	+1

•	•	•	
•	•	•	
<u>전문경력관</u> <u>나군(보안관리</u>			
<u>담당)</u>	<u>1</u>	<u><삭 제></u>	-1
•	•	•	
•	•	•	

[별표 3]

국방홍보원 공무원(군인제외) 정원표(제17조제2항 전단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121</u>	<u>120</u>	-1
전문경력관	<u>38</u>	<u>39</u>	+1